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61호 2022. 4. 18.(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보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36호)

공 고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634호)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생천지구)(예천군 공고 제2022-640호)
- 공인 폐기 및 신조(등록) 공고(예천군의회 공고 제2022-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보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보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18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보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위 치 : 예천군 면 성평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보문면 거점중심 공간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편인, 문화복지 등 기초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군비 1,200)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건강나눔센터, 보문나눔광장
 - 지역경관개선 : 건강다님길, 마을안전거리, 미호생태 공간정비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지역활성화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3년(4년간)
8.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참조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이에 지원 대상 재난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

3. 주요내용

○ 재난예방시설 지원대상 추가 신설(안 제3조제2항)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 그 밖에 예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3항)

- 지원신청서 및 읍·면장 의견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thsrh326@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3) 팩스 : 054-650-61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전화 : 054-650-6157)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의 제목 “(지원신청 등)”을 “(지원신청 및 결정)”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읍·면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에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 · 공고(생천지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천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예 천 군 수

1. 사 업 명: 생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예천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157필 / 213,871.4㎡
4. 지적확정조서: 【붙임 참조】
5. 공람기간: 2022. 4. 18. ~ 2022. 5. 2. (15일간)
6. 공람장소: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7. 공람 비치서류: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054-650-6925, 6381)

붙임 지적확정조서(생천지구) 1부. 끝.

공인 폐기 및 신조(등록) 공고

예천군의회 공인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공인 폐기·신조 및 등록(교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및 신조사유 : 서체변경

2. 사용개시일 : 2022. 4. 18.

3.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폐 기	예천군의회 의장인	전서체 2cm (정사각형)	
신 조	예천군의회 의장인	훈민정음체 2.4cm (정사각형)	

2022년 4월 18일

예 천 군 의 회 의 장